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933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668호)	한민수의원	2024.12.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24호)	이훈기의원	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78호)	최민희의원	2024.12.20.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 체회의(2025.3.5.)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805호)	황정아의원	2024.12.20.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 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5.4.17.) 상정/축조심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833호)	박민규의원	2024.12.23.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6.27.) 상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837호)	노종면의원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906호)	조인철의원	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042호)	김현의원	2024.12.27.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149호)	이해민의원	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15호)	이정현의원	2025.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72호)	김우영의원	2025.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346호)	서영교의원	2025.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317호)	신장식의원	2025.3.25.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15.)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4.17.) 상정/축조심사 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6.27.) 상정

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2.)에서 위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7. 7.)

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특표자를 추천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 3 신설).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을 “13명”으로, “한다”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frac{\text{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text{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5 \times \frac{\text{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text{의석수}}$$

2.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의3.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홍회의 이사 및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홍회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홍회의 이사와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u>9명</u>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u>한다</u> .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 ----- ----- <u>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가</u>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④ ----- ----- ----- <u>다음 각 호에 따라</u> <u>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u> <u>간-----.</u> <u>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u>
<신 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

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  
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  
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  
하되,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begin{array}{rcl} \text{각} & & \\ \text{교섭단체별} & = & 5 \times \frac{\text{해당 교섭단체}}{\text{의석수}} \\ \text{추천인 수} & & \\ \\ \div & & \text{각 교섭단체} \\ & & \text{의석수의 합계} \end{array}$$

### <신 설>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방  
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  
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신 설>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  
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  
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  
명

### <신 설>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  
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  
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  
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p> <p>⑥ (생략) 제9조(이理事会의 구성) ① ~ ③ (생략)</p>	<p><u>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u></p> <p><u>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u></p> <p><u>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u></p> <p><u>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u></p> <p><u>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u></p> <p><u>3. 추천 이유</u></p> <p><u>⑥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u></p> <p><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p> <p><u>제9조(이理事会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u></p>
--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⑤ · ⑥ (생 약)

④ -----  
-----. 다만, 제  
10조제10호에 따른 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  
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  
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  
에 대하여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  
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  
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  
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  
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  
표자를 추천한다.

⑥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  
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 ----- -----.
1. ~ 10. (생략) <u>&lt;신설&gt;</u>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u>
<u>&lt;신설&gt;</u>	<u>10의3.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정</u>
11. (생략) <u>&lt;신설&gt;</u>	11.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죄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u>

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채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